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9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오세희 · 이수진

전진숙 · 허성무 · 박지원

양문석 · 전종덕 · 이성운

박희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.

또한,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식 없애야 한다,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.

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,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8조).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은 탄핵결정이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회는 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위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<u>위원은</u>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① <u>위원은 탄핵결정이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② 국회는 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<u>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</u>